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04

발의연월일: 2021. 5. 27.

발 의 자:이개호・이병훈・윤재갑

홍성국 · 송갑석 · 주철현

위성곤 • 서삼석 • 임호선

이원택 · 김병기 · 정운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특허기술·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 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실용화 기반 위에 '농식품 벤처 및 청 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 업의 진흥 역할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

한편,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되고, 기술과 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을 통한 농산업 진흥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

7조).

법률 제 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실용화재단"을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37조 중 "실용화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33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 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립 · 운영) ①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 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 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 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 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 기술진흥원----진흥원---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 | 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③ 진흥원-----사업을 수행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제34조(실용화재단에 대한 예산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등)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 화재단의 설립 · 운영에 사용되 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제1항 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

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 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 <u>화재단</u>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실용화재단에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5조(실용화재단 업무의 지도 제 · 감독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용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③
<u>진흥원</u>
4
진흥원
진흥원
<u>.</u>
⑤ (현행과 같음)
∥35조(<u>진흥원</u> 업무의 지도·감
독 등) ①
-진흥원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실용화재단</u> 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 1. ~ 4. (생 략)
- ② 실용화재단은 제33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과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실용화재단에 과견할 수 있다.
- ③ <u>실용화재단</u>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저의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실용화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 <u>진흥원</u>
<u>.</u>
1. ~ 4.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
<u>진흥원</u>
③ <u>진흥원</u>
세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진흥원</u>